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137 호  
2017년7월19일(수)

여수시보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196호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7-197호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7
- 여수시 고시 제2017-198호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449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16
- 여수시 공고 제2017-146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17-1465호 여수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19
- 여수시 시전동 공고 제2017-43호 통장(47통) 모집 공고 /53

회 람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2017. 7. .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둔덕동 56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나. 명 칭: 녹지공원(원학동 방풍림 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95,77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허수영/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여천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이규정/여수시 여수산단3로 2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재율/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1
  -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창범/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 KPX라이프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양준영, 최수동/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년월일: 2017.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8. 관계도서: 게재 생략(여수시 도시계획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1	둔덕동	565-6	철	776	73	-	국(국토교통부)	
2	둔덕동	568-2	철	3,368	2,927	-	국(국토교통부)	
3	둔덕동	579-9	철	56	56	-	국(국토교통부)	
4	둔덕동	589-2	철	2,087	2,068	-	국(국토교통부)	
5	둔덕동	591-3	철	255	144	-	국(국토교통부)	
6	둔덕동	596-2	철	232	93	-	국(국토교통부)	
7	둔덕동	610-2	철	383	319	-	국(국토교통부)	
8	둔덕동	612-1	철	1,478	1,288	-	국(국토교통부)	
9	둔덕동	617-21	구	641	123	-	국(국토교통부)	
10	둔덕동	628	도	205	146	-	국(국토교통부)	
11	둔덕동	645-1	철	59	46	-	국(국토교통부)	
12	둔덕동	645-2	도	33	8	-	국(국토교통부)	
13	둔덕동	645-3	철	138	125	-	국(국토교통부)	
14	둔덕동	산144-5	철	99	22	-	국(국토교통부)	
15	둔덕동	산152-2	철	99	41	-	국(국토교통부)	
16	둔덕동	산153-2	철	694	680	-	국(국토교통부)	
17	둔덕동	산154-1	철	412	356	-	국(국토교통부)	
18	둔덕동	산154-4	도	628	545	-	국(국토교통부)	
19	둔덕동	산155-2	철	201	200	-	국(국토교통부)	
20	둔덕동	산155-14	도	1,039	32	-	국(국토교통부)	
21	둔덕동	산155-29	도	335	335	-	국(국토교통부)	
22	둔덕동	산155-36	도	97	42	-	여수시	
23	둔덕동	산156-2	철	1,712	1,709	-	국(국토교통부)	
24	둔덕동	산156-4	철	198	198	-	국(국토교통부)	
25	둔덕동	산157-3	철	198	198	-	국(국토교통부)	
26	선원동	44	도	4,135	10	-	국(국토교통부)	
27	선원동	45	도	18,787	2,348	-	국(국토교통부)	
28	선원동	48	임	7,715	155	-	여수시	
29	선원동	49	도	4,534	665	-	여수시	
30	선원동	81-1	철	49	44	-	국(국토교통부)	
31	선원동	89-1	철	1,224	22	-	국(국토교통부)	
32	선원동	97-1	철	1,165	1,144	-	국(국토교통부)	
33	선원동	98-1	철	13	3	-	국(국토교통부)	
34	선원동	215-2	철	4,685	190	-	국(국토교통부)	
35	선원동	1181-2	구	219	175	-	국(국토교통부)	
36	학동	138	도	35,125	110	-	국(국토교통부)	
37	학동	140	임	7,471	171	-	여수시	
38	학용동	6-2	철	152	152	-	국(국토교통부)	
39	학용동	19-2	철	195	191	-	국(국토교통부)	
40	학용동	20-1	철	761	756	-	국(국토교통부)	
41	학용동	21-2	철	615	615	-	국(국토교통부)	
42	학용동	23-1	철	327	327	-	국(국토교통부)	
43	학용동	23-2	철	43	43	-	국(국토교통부)	
44	학용동	45-2	철	1,133	1,133	-	국(국토교통부)	
45	학용동	48-2	철	843	843	-	국(국토교통부)	
46	학용동	50-1	철	165	165	-	국(국토교통부)	
47	학용동	101-1	철	1,975	1,975	-	국(국토교통부)	
48	학용동	129-1	철	650	650	-	국(국토교통부)	
49	학용동	132-2	철	1,154	1,154	-	국(국토교통부)	
50	학용동	174-1	철	33	33	-	국(국토교통부)	
51	학용동	232-3	공	202	195	-	여수시	
52	학용동	233-3	임	460	450	-	여수시	
53	학용동	234-1	철	3,001	2,968	-	국(국토교통부)	
54	학용동	234-2	전	151	151	-	여수시	
55	학용동	238	전	53	53	-	여수시	
56	학용동	239	전	263	97	-	여수시	
57	학용동	240	공	622	604	-	여수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58	학용동	283	전	473	437	-	여수시	
59	학용동	284	전	529	499	-	여수시	
60	학용동	287-2	공	234	25	-	여수시	
61	학용동	288-1	철	1,804	1,725	-	국(국토교통부)	
62	학용동	288-2	공	1,330	468	-	여수시	
63	학용동	289	묘	494	66	-	여수시	
64	학용동	290-3	묘	159	159	-	여수시	
65	학용동	291-3	전	268	259	-	여수시	
66	학용동	295-3	전	567	498	-	여수시	
67	학용동	296-1	전	86	86	-	황덕지	
68	학용동	313-3	묘	7	7	-	김두환	
69	학용동	313-4	묘	20	20	-	김두환	
70	학용동	314-5	전	817	817	-	여수시	
71	학용동	314-6	대	152	150	-	여수시	
72	학용동	314-7	전	45	45	-	여수시	
73	학용동	315-2	철	5,146	5,133	-	국(국토교통부)	
74	학용동	375-2	철	5,360	5,346	-	국(국토교통부)	
75	학용동	640-2	전	178	100	-	여수시	
76	학용동	641-3	전	99	86	-	여수시	
77	학용동	641-4	철	7	4	-	국(국토교통부)	
78	학용동	641-5	철	799	760	-	국(국토교통부)	
79	학용동	642-2	철	1,892	1,892	-	국(국토교통부)	
80	학용동	642-4	철	60	60	-	국(국토교통부)	
81	학용동	642-5	철	17	17	-	국(국토교통부)	
82	학용동	642-6	철	23	23	-	국(국토교통부)	
83	학용동	642-7	전	270	218	-	여수시	
84	학용동	643-3	철	20	20	-	국(국토교통부)	
85	학용동	649-3	전	60	60	-	여수시	
86	학용동	650-3	철	30	30	-	국(국토교통부)	
87	학용동	650-4	철	17	17	-	국(국토교통부)	
88	학용동	650-5	전	334	325	-	여수시	
89	학용동	651	전	90	9	-	여수시	
90	학용동	652-2	전	631	481	-	여수시	
91	학용동	652-3	임	76	23	-	여수시	
92	학용동	670-2	전	147	147	-	여수시	
93	학용동	671-3	전	16	16	-	여수시	
94	학용동	682-2	철	8,528	7,566	-	국(국토교통부)	
95	학용동	766-2	철	1,818	1,706	-	국(국토교통부)	
96	학용동	920-1	도	11	11	-	국(국토교통부)	
97	학용동	924	구	1,324	207	-	국(국토교통부)	
98	학용동	924-9	구	527	251	-	국(국토교통부)	
99	학용동	924-10	구	539	178	-	국(국토교통부)	
100	학용동	924-11	구	240	160	-	국(국토교통부)	
101	학용동	930-32	도	423	107	-	국(국토교통부)	
102	학용동	930-35	도	95	63	-	국(국토교통부)	
103	학용동	930-68	도	250	250	-	국(국토교통부)	
104	학용동	930-70	도	122	122	-	국(국토교통부)	
105	학용동	930-71	도	194	194	-	국(국토교통부)	
106	학용동	930-72	도	30	20	-	국(국토교통부)	
107	학용동	933	구	882	849	-	국(국토교통부)	
108	학용동	산35-2	철	1,289	1,289	-	국(국토교통부)	
109	학용동	산50-2	철	1,388	1,388	-	국(국토교통부)	
110	학용동	산51-2	철	298	298	-	국(국토교통부)	
111	학용동	산52-2	철	2,876	2,876	-	국(국토교통부)	
112	학용동	산54-1	철	298	298	-	국(국토교통부)	
113	학용동	산57-2	철	992	992	-	국(국토교통부)	
114	학용동	산58-1	철	1,091	1,091	-	국(국토교통부)	
115	학용동	산59-2	철	198	198	-	국(국토교통부)	
116	학용동	산60-2	철	496	496	-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117	학용동	산63-2	철	1,686	1,686	-	국(국토교통부)	
118	학용동	산65-1	철	496	496	-	국(국토교통부)	
119	학용동	산67-2	철	3,967	3,906	-	국(국토교통부)	
120	학용동	산68-2	철	1,388	1,388	-	국(국토교통부)	
121	학용동	산68-3	철	298	298	-	국(국토교통부)	
122	학용동	산73-2	철	3,372	3,249	-	국(국토교통부)	
123	학용동	산80-1	철	26	26	-	국(국토교통부)	
124	학용동	산80-3	철	2,380	2,380	-	국(국토교통부)	
125	학용동	산80-4	철	30	30	-	국(국토교통부)	
126	학용동	산80-5	철	13	13	-	국(국토교통부)	
127	학용동	산80-9	천	298	52	-	국(국토교통부)	
128	학용동	산82-2	철	992	992	-	국(국토교통부)	
129	학용동	산82-3	철	40	40	-	국(국토교통부)	
130	학용동	산82-4	철	36	36	-	국(국토교통부)	
131	학용동	산83-2	철	36	36	-	국(국토교통부)	
132	학용동	산84-2	철	496	496	-	국(국토교통부)	
133	학용동	산88-2	철	1,488	1,477	-	국(국토교통부)	
134	학용동	산89-2	철	198	191	-	국(국토교통부)	
135	학용동	산89-3	철	33	33	-	국(국토교통부)	
136	학용동	산94-2	철	1,983	1,965	-	국(국토교통부)	
137	학용동	산95-1	철	298	298	-	국(국토교통부)	
138	학용동	산99-2	철	99	99	-	국(국토교통부)	
139	학용동	산99-3	철	496	455	-	국(국토교통부)	
140	학용동	산99-5	철	1,048	569	-	국(국토교통부)	
141	학용동	산99-6	철	99	99	-	국(국토교통부)	
142	학용동	산99-18	천	198	127	-	국(국토교통부)	
143	학용동	산100-2	철	595	595	-	국(국토교통부)	
144	학용동	산102-2	철	3,967	3,967	-	국(국토교통부)	
145	학용동	산102-5	도	97	97	-	국(국토교통부)	
146	학용동	산102-6	천	2,182	486	-	국(국토교통부)	
147	학용동	산102-10	도	300	186	-	국(국토교통부)	
	계	(147필지)		188,144	95,772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7. .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화장동 145-2, 선원동 630-2 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나. 명 칭 : 녹지공원(선원뜨레 방풍림 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49,145.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허수영/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여천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이규정/여수시 여수산단3로 2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재율/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창범/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 KPX라이프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양준영, 최수동/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7.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2. 31.
6.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선원뜨레공원	근린공원	선원동 849-2 일원	56,790.0	변경없음	여수시 고시 제2012-222호	

나. 공원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공원명	위 치	공원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선원뜨레공원	선원동 849-2 일원	56,790.0	변경없음	21,552.0	22,650.0	313.7	변경없음	

다. 공원 시설조서(변경)

구 분	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시설면적	21,552.0(38.0%)	22,650.0(39.9%)	

라. 공원 건축조서(변경없음)

구분	건축면적(m <sup>2</sup>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313.7	변경없음	313.7	변경없음	

마. 공원 시설결정 총괄표(변경)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56,790.0	56,790.0	313.7	313.7	313.7	313.7	
시	소계	21,552.0	22,650	313.7	313.7	313.7	313.7	
시설	도로 및 광장	14,523.8	14,741.3					
	조경시설	677.1	677.1					
	휴양시설	-	-					
	유희시설	474.6	474.6					
	운동시설	1,155.3	1,155.3					
	교양시설	257.6	257.6	257.6	257.6	257.6	257.6	
	편의 및 관리시설	3,395.8	3,395.8	56.1	56.1	56.1	56.1	
녹지 및 기타	녹지	35,238.0	34,140.0					
	기타시설(도로, 송전탑, 여천터미널, 교량)	1,067.8	1,948.3					

바. 공원 시설결정조서(변경)

1) 시설조서

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내용	시설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규모(개소)	건축면적(m <sup>2</sup>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기정	-	-	-	56,790.0		313.7	313.7	
	변경	-	-	-	56,790.0		313.7	313.7	
시설합계	기정	-	-	-	21,552.0		313.7	313.7	38.0%
	변경	-	-	-	22,650.0		313.7	313.7	39.9%
도로 및 광장	기정	-	도로	공원 전 지역	13,263.3				
	변경	-	도로	공원 전 지역	13,480.8				
		1-1	진입광장	선원동 202-3철	395.7				
		1-2	휴게광장	선원동 206-2철	162.4				
		1-3	중앙광장	선원동 206-2철	702.4				
		기정	소계		14,523.8				
		변경	소계		14,741.3				
조경 시설		2-1	초화원	선원동 215-2철	677.1				
		소계		677.1					
휴양 시설		3-1	파고라	공원 전 지역	-	14			
		3-2	평의자	공원 전 지역	-	42			
		3-3	등의자	공원 전 지역	-	30			
		3-4	사각의자	중앙광장 내	-	4			
		소계			-				
유희 시설		4-1	어린이놀이터	선원동 206-2철	474.6				
		4-2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터 내		2			
		4-3	놀이시설A	어린이놀이터 내		2			
		4-4	놀이시설B	어린이놀이터 내		2			
		4-5	놀이시설C	어린이놀이터 내		3			
		소계			474.6				
운동 시설		5-1	배드민턴장	선원동 202-2철	417.6				
		5-2	족구장	선원동 206-2철	480.0				
		5-3	체력단련장	선원동 215-2철	257.7				

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내용	시설위치	부지면적 (㎡)	규모 (개소)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5-4	체력단련시설A	체력단련장 내	-	1			
		5-5	체력단련시설B	체력단련장 내	-	1			
		5-6	체력단련시설C	체력단련장 내	-	1			
		5-7	체력단련시설D	체력단련장 내	-	1			
		5-8	체력단련시설E	체력단련장 내	-	1			
		소계				1,155.3			
교양 시설	6-1	6-1	문화센터	선원동 202-3철	257.6		257.6	257.6	
			소계				257.6		
편의 및 관리 시설	7-1	7-1	주차장A	선원동 630-2철	1,237.5				
	7-2	7-2	주차장B	선원동 768-2철	318.9				
	7-3	7-3	주차장C	선원동 768-2철	673.3				
	7-4	7-4	주차장D	선원동 229-2임	739.0				
	7-5	7-5	주차장E	선원동 89-1철	311.0				
	7-6	7-6	U-Bike환승센터	선원동 202-3철	60.0				
	7-7	7-7	관리사무실	선원동 206-2철	56.1		56.1	56.1	
		소계				3,395.8			
녹지 및 기타	기정	8-1	녹지	공원 전 지역	35,238.0				62.0%
	변경	8-1	녹지	공원 전 지역	34,140.0				60.1%
	기정	8-2	지하보도 (기타시설)	화장동 134-1철	-	1			
	변경	8-2	도로 (도시계획도로)	화장동 134-1철	880.5	-			
		8-3	송전탑 (기타시설)	선원동 630-2철	44.4				
		8-4	여천터미널 (기타시설)	선원동 1287-1대	1,023.4				
		8-5	교량(기타시설)	선원동 215-2철	-	1			
	기정		소계				36,305.8		
변경		소계				36,088.3			

## 2) 도로조서

변경구분	규모			폭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변경없음	소로	2	1	8.0	23.7	189.3	진입로	선원동 1288도	선원동 752-1답	
변경없음	소로	2	2	8.0	24.3	194.1	진입로	선원동 1318도	선원동 748-11진	
변경없음	소로	2	3	8.0	31.2	248.9	진입로	선원동 1318도	선원동 830-6진	
변경없음	소로	2	4	8.0	37.5	300.1	진입로	선원동 1318도	선원동 848-3답	
기정	소로	3	1	3.0	8.4	25.2	연결로	선원동 산51-3철	지하보도	
변경	소로	3	1	3.0	29.2	87.4	연결로	선원동 산51-3철	교차로	
기정	소로	3	2	2.5	12.0	30.1	산책로	선원동 산51-3철	지하보도	
변경	소로	3	2	2.5	29.7	75.0	산책로	선원동 산51-3철	교차로	
기정	소로	3	3	3.0	363.0	1,089.0	연결로	지하보도	소3-7	
변경	소로	3	3	3.0	384.3	1,153.0	연결로	교차로	소3-7	
기정	소로	3	4	2.5	362.9	907.4	산책로	지하보도	소3-7	
변경	소로	3	4	2.5	381.3	953.8	산책로	교차로	소3-7	
변경없음	소로	3	5	2.0	9.8	19.6	진입로	선원동 566-30답	소3-3	
변경없음	소로	3	6	3.0	30.2	90.9	진입로	선원동 799도	소3-4	
변경없음	소로	3	7	3.0	11.1	33.2	진입로	선원동 705-1답	주차장A	
변경없음	소로	3	8	3.0	6.0	17.8	진입로	선원동 1288도	주차장A	
변경없음	소로	3	9	3.0	12.2	36.3	진입로	선원동 752-1답	주차장B	
변경없음	소로	3	10	3.0	6.0	17.8	진입로	선원동 1288도	주차장B	
변경없음	소로	3	11	3.0	154.9	464.6	연결로	소3-9	소3-15	
변경없음	소로	3	12	2.5	154.1	395.4	산책로	소3-9	소3-15	
변경없음	소로	3	13	2.0	4.9	9.8	진입로	선원동 748-5임	소3-11	
변경없음	소로	3	14	2.0	20.0	41.3	진입로	선원동 1288도	소3-12	
변경없음	소로	3	15	2.0	24.8	49.6	진입로	선원동 1288도	선원동 748-11진	
변경없음	소로	3	16	2.0	23.7	47.4	진입로	선원동 1318도	선원동 748-11진	
변경없음	소로	3	17	3.0	425.0	1,274.9	연결로	소3-16	소3-24	
변경없음	소로	3	18	2.5	423.3	1,058.7	산책로	소3-16	소3-24	
변경없음	소로	3	19	2.0	5.5	11.1	진입로	선원동 764-1답	소3-17	

변경 구분	규모			폭 (M)	연장 (M)	면적 (m <sup>2</sup>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변경없음	소로	3	20	2.0	10.7	21.9	진입로	선원동 1318도	소3-18	
변경없음	소로	3	21	3.0	10.6	32.1	진입로	선원동 1318도	소3-18	
변경없음	소로	3	22	2.0	34.0	67.9	진입로	선원동 817-1답	소3-17	
변경없음	소로	3	23	2.0	29.4	62.1	진입로	선원동 1318도	소3-18	
변경없음	소로	3	24	2.0	32.3	62.7	진입로	소3-25	소2-4	
변경없음	소로	3	25	2.0	30.3	60.6	진입로	소3-25	소2-4	
변경없음	소로	3	26	3.0	218.1	654.2	연결로	소3-25	소2-4	
변경없음	소로	3	27	2.5	237.0	584.6	산책로	소3-25	소2-4	
변경없음	소로	3	28	2.0	6.6	13.2	진입로	선원동 844-1답	소3-26	
변경없음	소로	3	29	2.0	26.9	56.2	진입로	선원동 1318도	소3-27	
변경없음	소로	3	30	3.0	649.5	2,073.7	연결로	소2-4	소3-43	
변경없음	소로	3	31	2.5	578.0	1,437.6	산책로	소2-4	소3-40	
변경없음	소로	3	32	2.0	8.0	16.1	진입로	선원동 899-5입	소3-30	
변경없음	소로	3	33	2.0	4.8	10.1	진입로	선원동 899-12도	소3-31	
변경없음	소로	3	34	2.0	6.2	12.4	진입로	선원동 192-1전	소3-30	
변경없음	소로	3	35	2.0	5.3	11.4	진입로	선원동 185-3도	소3-31	
변경없음	소로	3	36	2.0	2.6	5.2	진입로	선원동 194-5전	소3-30	
변경없음	소로	3	37	2.0	2.5	5.4	진입로	선원동 194-7도	소3-31	
변경없음	소로	3	38	2.0	5.5	10.9	진입로	선원동 229-2입	소3-30	
변경없음	소로	3	39	2.0	7.6	15.7	진입로	선원동 194-3도	소3-31	
변경없음	소로	3	40	3.0	49.5	152.4	연결로	관리사무실	진입광장	
변경없음	소로	3	41	3.0	14.3	43.4	연결로	소3-40	소3-30	
변경없음	소로	3	42	2.5	101.8	254.2	산책로	소3-41	소3-43	
변경없음	소로	3	43	7.0	31.9	222.3	진입로	선원동 212-2전	231도	
변경없음	소로	3	44	3.0	9.6	28.7	진입로	소3-45	231도	
변경없음	소로	3	45	3.0	120.8	363.3	연결로	소3-43	교량	
변경없음	소로	3	46	2.5	135.7	352.3	산책로	선원동 212-2전	교량	
변경없음	소로	3	47	5.0	16.0	80.2	진입로	선원동 44도	소3-45	
기정	소 계			-	-	13,263.3	-	-	-	
변경	소 계			-	-	13,480.8	-	-	-	-

사.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9.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여수시 도시계획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화장동	145-2	철	3,592.0	2.0		국토교통부	
2	화장동	산51-3	철	1,041.0	749.0		국토교통부	
3	화장동	134-2	철	1,700.0	1,700.0		여수시	
4	화장동	134-1	철	710.0	710.0		국토교통부	
5	화장동	671-4	구	79.0	79.0		국토교통부	
6	화장동	1194-3	구	102.0	102.0		국토교통부	
7	선원동	623-3	철	34.0	34.0		여수시	
8	선원동	623-2	철	1,506.0	1,506.0		국토교통부	
9	선원동	1183-8	도	73.0	73.0		국토교통부	
10	화장동	799	도	8,884.5	39.3		여수시	
11	선원동	630-2	철	3,130.0	3,109.1		국토교통부	
12	선원동	806	임	249.4	249.4		여수시	
13	선원동	1183-62	도	508.0	51.0		국토교통부	
14	선원동	692-3	철	17.0	17.0		국토교통부	
15	선원동	693-2	도	3.0	3.0		국토교통부	
16	선원동	768-2	철	9,723.0	9,723.0		국토교통부	
17	선원동	1287-1	대	792.8	792.8		여수시	
18	선원동	1288	도	10,488.1	45.3		여수시	
19	선원동	1287	임	1,529.5	1,529.5		여수시	
20	선원동	산150-2	철	99.0	99.0		국토교통부	
21	선원동	771-3	철	1,048.0	1,048.0		국토교통부	
22	선원동	1313	임	5,102.9	3,842.0		여수시	
23	선원동	1183-74	도	678.0	320.0		국토교통부	
24	선원동	829-2	철	3,453.0	3,453.0		국토교통부	
25	선원동	829-3	철	3.0	3.0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6	선원동	830-3	철	10.0	10.0		여수시	
27	선원동	800-1	철	583.0	583.0		국토교통부	
28	선원동	1183-67	도	1,162.0	678.8		국토교통부	
29	선원동	847-2	철	10.0	10.0		국토교통부	
30	선원동	847-1	철	36.0	36.0		국토교통부	
31	선원동	849-2	철	5,017.0	5,017.0		국토교통부	
32	선원동	1187	구	1,232.0	91.0		국토교통부	
33	선원동	895-5	도	139.0	33.0		여수시	
34	선원동	895-2	답	23.0	5.0		여수시	
35	선원동	899-2	철	3,957.0	3,957.0		국토교통부	
36	선원동	1187-5	구	264.0	66.0		국토교통부	
37	선원동	185-1	철	1,404.0	1,404.0		국토교통부	
38	선원동	1183-59	도	25.0	25.0		국토교통부	
39	선원동	194-2	철	1,091.0	1,091.0		국토교통부	
40	선원동	1183-6	도	1,305	62		국토교통부	
41	선원동	286-2	철	952	519		여수시	
42	선원동	229-2	임	2200	2151		여수시	
43	선원동	산95-3	철	198	7		여수시	
44	선원동	230	잡	953.8	953.8		여수시	
45	선원동	202-2	철	589	82		여수시	
46	선원동	1185-3	구	126	12		국토교통부	
47	선원동	206-2	철	2,283	299		여수시	
48	선원동	206-29	철	195	87		여수시	
49	선원동	1183-58	도	44	6		여수시	
50	선원동	215-2	철	4,685	1,249		여수시	
51	선원동	89-1	철	1,224	1,192		여수시	
52	선원동	44	도	4,135	239		국토교통부	
계				88,389.0	49,145.2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2017. 6. .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화장동 145-2, 선원동 630-2 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나. 명 칭 : 녹지공원(덕양양지바름 방풍림 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66,61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허수영/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여천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이규정/여수시 여수산단3로 2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재율/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창범/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 KPX라이프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양준영, 최수동/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7.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여수시 도시계획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소라면 덕양리	1478	철	12,446	635.0		국토교통부	
2	소라면 덕양리	1427	천	103,015	1,191.0		국토교통부	
3	소라면 덕양리	1412-24	철	28,696	6,413.0		국토교통부	
4	소라면 덕양리	1412-22	철	960	960		국토교통부	
5	해산동	296-7	철	7	7		국토교통부	
6	해산동	296-10	철	50	50		국토교통부	
7	해산동	296-9	철	103	103		국토교통부	
8	소라면 덕양리	1412-23	철	355	355		국토교통부	
9	해산동	296-2	철	1,351	1,351		국토교통부	
10	해산동	587-10	천	63	63		국토교통부	
11	해산동	296-4	철	1,241.0	1,110		국토교통부	
12	해산동	603	도	192.0	192		국토교통부	
13	해산동	587-20	천	155.0	155.0		국토교통부	
14	해산동	산83-6	철	247.0	247.0		국토교통부	
15	해산동	산83-1	철	6,199.0	6,199.0		국토교통부	
16	해산동	294-5	철	674.0	627.0		국토교통부	
17	해산동	294-2	철	1,098.0	1,098.0		국토교통부	
18	해산동	294-14	철	13.0	13.0		국토교통부	
19	해산동	산82-6	철	51.0	51.0		국토교통부	
20	해산동	294-3	철	122.0	122.0		국토교통부	
21	해산동	587-19	천	1,573.0	604.0		국토교통부	
22	해산동	292-2	철	1,580.0	1,252.0		국토교통부	
23	해산동	583-2	도	169.0	116.0		국토교통부	
24	해산동	산82-3	철	3,618.0	3,618.0		국토교통부	
25	해산동	293-1	철	132.0	132.0		국토교통부	
26	해산동	587-12	천	599.0	599.0		국토교통부	
27	해산동	290	철	1,649.0	1,179.0		국토교통부	
28	해산동	587-4	천	301.0	301.0		국토교통부	
29	해산동	148-2	철	2,721.0	2,721.0		국토교통부	
30	해산동	586-1	도	33.0	33.0		국토교통부	
31	해산동	587-5	천	99.0	99.0		국토교통부	
32	해산동	156-3	철	1,637.0	1,637.0		국토교통부	
33	해산동	269-2	철	4,770.0	4,770.0		국토교통부	
34	해산동	589-6	도	116.0	116.0		국토교통부	
35	해산동	675-3	도	45.0	45.0		국토교통부	
36	화장동	산2-1	철	3,173.0	3,173.0		국토교통부	
37	화장동	675-5	철	258.0	30.0		국토교통부	
38	화장동	225-4	철	49.0	21.0		국토교통부	
39	화장동	225-2	철	4,814.0	4,814.0		국토교통부	
40	화장동	675-1	도	74.0	74.0		국토교통부	
41	화장동	675-6	도	1,388.0	92.0		국토교통부	
42	화장동	225-5	철	369.0	369.0		국토교통부	
43	화장동	675-7	도	84.0	84.0		국토교통부	
44	화장동	225-6	철	140.0	140.0		국토교통부	
45	화장동	675-8	도	333.0	333.0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6	화장동	190-3	철	36.0	36.0		국토교통부	
47	화장동	190-2	철	56.0	56.0		국토교통부	
48	화장동	196-3	철	155.0	155.0		국토교통부	
49	화장동	675-4	도	33.0	33.0		국토교통부	
50	화장동	191-1	철	11.0	11.0		국토교통부	
51	화장동	195-2	철	27.0	27.0		국토교통부	
52	화장동	195-5	철	9.0	9.0		국토교통부	
53	화장동	191-4	철	179.0	179.0		국토교통부	
54	화장동	191-5	철	2,002.0	2,002.0		국토교통부	
55	화장동	산12-1	임	1,488.0	1,488.0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687	이영래 외5인	
56	화장동	677-2	도	915.0	88.0		국토교통부	
57	화장동	676-2	구	2,002.0	311.0		국토교통부	
58	화장동	180-2	철	2,483.0	2,483.0		국토교통부	
59	화장동	672-4	도	598.0	72.0		국토교통부	
60	화장동	산48-2	철	972.0	972.0		국토교통부	
61	화장동	168-2	철	483.0	483.0		국토교통부	
62	화장동	산48-4	철	1,424.0	1,424.0		국토교통부	
63	화장동	산12-2	철	5,355.0	5,355.0		국토교통부	
64	화장동	145-2	철	3,592.0	3,592.0		국토교통부	
65	화장동	산51-3	철	1,041.0	540.0		국토교통부	
계				184,455.0	66,615.0			

## 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륜차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회수·말소 등 자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8일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7년 7월 19일 ~ 2017년 8월 3일(15일간)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7년 8월 5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관내 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 대상 : 이륜차 1대 **【붙임 내역참조】**
  5.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본 공고 기간 내 자진 처리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매각·폐차) 됨을 알려 드리며 소유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20~100만원)납부 통고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여수시 교통과 061-659-4144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 함.

# 강제(폐차)처리 대상 무단방치 이륜차

관리번호	2017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번호 : 미상</li> <li>○ 소 유 자 : 미상</li> <li>○ 방치내역</li> <li>- 견인예정일 : '17. 8. 5.이후</li> <li>- 방치장소 : 여수시 미평4길 6-10,(미평동) 등대교회 앞</li> </ul>		

(80\*80)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7. 07. 19.

# 여 수 시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7. 07. 19. ~ 2017. 08. 03.(15일간)
3.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7. 08. 08.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일반 음식점	제22-162호	신선식당	추○숙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28 (오림동)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15. 12. 31.)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고지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17.08.03.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여수시 식품위생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식품위생과 ☎ (061) 659-4237

# 여수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여수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과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7월 19일

## 여 수 시 장

###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여수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 위 치: 여수시 관내 약 107개 소하천(연장 149.115km)
- 사업시행자: 여수시

###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2017. 7. 19 ~ 2017. 8. 3.(14일간)
- 공개장소: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에 제출
- 제출방법: 여수시청 건설방재과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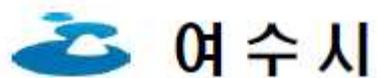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설방재과(☎061-659-4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서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여수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서-

2017. 7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여수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개수림)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공개 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 계획의 내용

- 사업명 : 여수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개수림)
- 사업시행자 : 여수시
-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승인기관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 계획수립 후 10년
- 공간적 범위
  - 여수시 관내 소하천 L = 149.116km(107개소)
  - (1출·4변·7동) 동산출, 소라면, 읍촌면, 화양면, 남면, 민덕동, 쌍봉동, 여천동, 구심동, 삼일동, 미령동, 묘도동 등

<표 1.1-1> 사업대상 소하천

출면별	번호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근회조성거리구간		소하천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동산출 (18개소)	1	007	작금3천	동산출 금성리 691	동산출 금성리 452-4	0.919	
	2	009	평사2천	동산출 평사리 937-4	동산출 평사리 1142-6	1.084	
	3	011	덕개천	동산출 서덕리 1213	동산출 죽포리 177-5	4.106	
	4	012	관봉천	동산출 관봉리 823	동산출 관봉리 1419-41	1.047	
	5	013	신기천	동산출 신복리 750-1개	동산출 신복리 872-8호	1.192	
	6	014	대복천	동산출 신복리 1547	동산출 신복리 1522-3	2.304	
	7	016	송사천	동산출 관봉리 581	동산출 관봉리 1357-2	0.349	

<표 1.1-1 계속> 과업대상 소하원

읍면별	번호	소하원 번호	소하원명	근회소재지거리구간		소하원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동산읍	8	017	동대1천	동산읍 군내리 8-2	동산읍 군내리 128	0.773		
	(18개소)	9	018	동대2천	동산읍 군내리 220	동산읍 군내리 132-1	0.634	
		10	020	적금2천	동산읍 금성리 878	동산읍 금성리 441	1.129	
		11	022	대촌1천	동산읍 용림리 340	동산읍 용림리 621	0.536	
		12	023	대촌2천	동산읍 용림리 226-2	동산읍 용림리 643	0.535	
		13	024	백포1천	동산읍 용림리 508	동산읍 용림리 618	0.536	
		14	025	백포2천	동산읍 용림리 산321-1	동산읍 용림리 613	0.958	
		15	026	평서1천	동산읍 평서리 510	동산읍 평서리 산520	0.530	
		16	028	상동천	동산읍 우두리 510-1	동산읍 우두리 353-2	1.225	
소라면		17	031	하판천	소라면 판기리 230	소라면 판기리 1230	1.924	
	(24개소)	18	032	당촌2천	소라면 봉두리 743	소라면 봉두리 1253-5	0.915	
		19	035	소라신기천	소라면 태포리 산146-13	소라면 태포리 1636	1.100	
		20	036	가산천	소라면 덕양리 443-1	해산동 630-15	2.300	
		21	037	하외곡천	소라면 봉두리 1004-1	소라면 봉두리 914-3	2.690	
		22	038	삼곡천	소라면 죽림리 76-4	소라면 죽림리 737	1.336	
		23	039	상분천	소라면 죽림리 1010	소라면 죽림리 1095	0.600	
		24	041	머루천	소라면 현천리 32-1	소라면 현천리 133-7	0.540	
		25	042	상새동천	소라면 덕양리 1113	소라면 덕양리 1412-25	1.245	
		26	043	하새동천	소라면 덕양리 1346	소라면 덕양리 1412-25	1.035	
		27	044	옥산천	소라면 덕양리 182-1	소라면 덕양리 501-1	0.665	
		28	045	중촌1천	소라면 현천리 790-2	소라면 판기리 1093-2	3.750	
		29	046	중촌2천	소라면 현천리 505-1	소라면 현천리 1095	0.752	
		30	047	신흥1천	소라면 복산리 1267-8	소라면 복산리 1933-8	1.180	
		31	048	신흥2천	소라면 복산리 361-1	소라면 복산리 1981-2	2.806	

<표 1.1-1 계속> 과업대상 소하천

용면별	번호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금회조성과업구간		소하천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소리면 (24개소)	32	049	신흥3천	소리면 복산리 228	소리면 복산리 83	0.858	
	33	050	하누재천	소리면 복산리 778	소리면 봉두리 1382-5	2.118	
	34	051	상사천	소리면 사곡리 산5-5	소리면 사곡리 302-1	1.000	
	35	052	하사천	소리면 사곡리 209	소리면 사곡리 495-9	1.539	
	36	053	정척천	소리면 사곡리 산193-3	소리면 사곡리 1311	0.833	
	37	054	상복천	소리면 사곡리 351	소리면 사곡리 998-1	0.818	
	38	055	탕촌천	소리면 봉두리 98-1	소리면 봉두리 1289-1	0.383	
	39	058	장전천	소리면 대포리 519	소리면 대포리 1433-11	1.590	
	40	057	대포천	소리면 대포리 993-1	소리면 대포리 776	1.011	
	용촌면 (18개소)	41	088	삼산천	용촌면 반월리 271-5	용촌면 반월리 351	1.303
42		087	연내천	용촌면 신봉리 1388-4	용촌면 신봉리 824-6	0.550	
43		083	취척천	용촌면 신봉리908	용촌면 신봉리 883-4	0.500	
44		089	가정천	용촌면 가정리 142	용촌면 가정리 1950-1	1.150	
45		091	외정천	용촌면 월산리 1200	용촌면 조화리 355-1	2.480	
46		093	봉두천	용촌리 산수리 411-3	용촌면 월산리 1483	1.330	
47		094	산촌천	용촌면 산수리 산1594-1	용촌면 산수리 1558-4	0.550	
48		095	행정천	용촌면 산수리 1594-1	용촌면 산수리 1558-4	0.330	
49		098	내리천	용촌면 상봉리 1101	용촌면 반월리 898	1.800	
50		097	두봉천	용촌면 상봉리 1014	용촌면 상봉리 728-18	2.330	
51		093	신봉천	용촌면 가정리 산3-1	용촌면 신봉리 1249	2.750	
52		099	우산천	용촌면 신봉리 산120-3	용촌면 신봉리 1382-5	2.150	
53		100	평암천	용촌면 봉전리 932-1	용촌면 상봉리 728-18	1.583	
54		101	신산천	용촌면 취척리 1381-2	용촌면 취척리 21-1	1.328	
55		102	기림천	용촌면 봉전리 496	용촌면 봉전리 925-2	1.430	

<표 1.1-1 계속> 과업대상 소하천

유역면	번호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금회조성과업구간		소하천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솔촌면 (13개소)	56	103	봉전천	솔촌면 취적리 1236-4	솔촌면 취적리 1564-3	1.400	
	57	-	연회지천	솔촌면 가정리 산270-4	솔촌면 가정리 1360	2.550	
	58	-	송곡천	솔촌면 가정리 504-2	솔촌면 가정리 694	1.190	
회양면 (20개소)	59	104	나진2천	회양면 나진리 766	회양면 나진리 766	0.500	
	60	105	청양천	회양면 회동리 299일대	회양면 회동리 2117	1.434	
	61	106	안포2천	회양면 회동리 42-2	회양면 안포리 1698-12	0.935	
	62	107	소포천	회양면 안포리 107-1	회양면 안포리 1258	0.800	
	63	108	장무천	회양면 장무리 398-6	회양면 장무리 1139-1	2.944	
	64	109	백초천	회양면 장무리 산185-2	회양면 장무리 710-4	0.989	
	65	110	나진1천	회양면 나진리 765-1	회양면 나진리 422-4	0.904	
	66	111	용동천	회양면 용주리 산28	회양면 나진리 524-6	1.060	
	67	112	회련1천	회양면 용주리 산226-1	회양면 용주리 1403-2	1.148	
	68	113	회련2천	회양면 용주리 1518-1	회양면 용주리 1403-6	1.194	
	69	114	회양오천천	회양면 이천리 46	회양면 이천리 221-3	0.792	
	70	115	회동천	회양면 회동리 592	회양면 회동리 597-1	1.499	
	71	117	소정천	회양면 회동리 176-1	회양면 안포리 50-7	2.200	
	72	118	대옥천	회양면 옥척리 153-2	회양면 옥척리 1953-2	3.300	
	73	119	봉오천	회양면 서촌리 산246-3	회양면 서촌리 1434	1.212	
	74	120	이목천	회양면 이목리 산197-1	회양면 이목리 1117-3	1.137	
	75	121	구미천	회양면 이목리 산401	회양면 이목리 1412-5	1.334	
	76	122	장수천	회양면 장수리 1121	회양면 장수리 1292-26	1.314	
	77	123	천포천	회양면 안포리 1136	회양면 안포리 680-1	1.453	
	78	124	안포1천	회양면 안포리 1729-3	회양면 안포리 1900-11	1.316	
남면 (8개소)	79	001	우실천	남면 우척리 501	남면 우척리 181	0.970	
	80	002	심포천	남면 심정리 480	남면 심정리 874-37	0.937	

<표 1.1-1 계속> 과업대상 소하권

읍면별	번호	소하권 번호	소하권명	근회포장과업구간		소하권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남면 (6개소)	81	003	사정천	남면 도모리 56	남면 두모리 579	0.315	
	82	004	모하천	남면 두모리 671	남면 두모리 452-1	1.954	
	83	005	두포천	남면 두모리 306-1	남면 두모리 1393-4	1.792	
	84	008	대유천	남면 유송리 375-2	남면 유송리 213-3	0.907	
동지역 (23개소)	85	053	군장천	회정동 676-3	회정동 179-1	0.340	
	86	059	봉장2천	주삼동 4-7	봉계동 461	1.050	
	87	080	자내천	호명동 자내리 산163-1	호명동 1424	0.600	
	88	081	사근지천	호명동 산 206-53	중흥동 산 190-4	2.990	
	89	082	적읍천	상임동 203	상임동 2187-45	0.300	
	90	083	적양천	상임동 194-2	미령동 575-6	1.200	
	91	084	죽림천	미령동 81-3	미령동 912-2	1.600	
	92	088	덕대천	덕충동 834	덕충동 834-10	1.750	
	93	087	민흥천	민흥동 1266	민흥동 97-3	2.760	
	94	070	오천천	오천동 435-2	오천동 174-9	0.300	
	95	071	소계천	소호동 795	소호동 920	1.290	
	96	072	내동천	여천동 861-16	여천동 676-2	1.300	
	97	073	대곡천	봉계동 산 117-1	여천동 351-2	1.399	
	98	074	계천천	봉계동 산 70-1	봉계동 456-3	1.119	
	99	075	중방천	주삼동 854	원하동 144	3.199	
	100	076	호명천	호명동 1599	호명동 881	5.450	
	101	077	호흥천	호명동 124	호명동 702-1	0.920	
	102	079	진남천	상임동 1614	상임동 2241	0.710	
	103	080	진북천	상임동 1913	상임동 2187-7	1.100	
	104	081	편상임천	상임동 1033	상임동 813	0.320	
	105	082	신덕천	신덕동 354	신덕동 4-9	1.030	
	106	083	소저천	신덕동 846-4	신덕동 813	0.740	
	107	084	묘흥천	묘도동 1773	묘도동 772	3.210	



(그림1.1-1) 국경대상 소하천 위치도

##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정량의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
- 본 계획은 여수시 관내 107개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으로 하천 총 연장은 149.115km임.

<표 2.1-1> 여수시 소하천 행정구역

구분	읍·면·동	해당 소하천*
여수시	동산읍(16개소)	작금3천, 평사2천, 덕개천, 근봉천, 신기천, 대북천, 송사천, 동대1천, 동대2천, 직금2천, 대촌1천, 대촌2천, 백포1천, 백포2천, 평사1천, 상동천
	소리면(24개소)	하판천, 당촌2천, 소리신기천, 가산천, 하회곡천, 삼곡천, 상촌천, 이문천, 상새동천, 하새동천, 옥산천, 중촌1천, 중촌2천, 신흥1천, 신흥2천, 신흥3천, 허누재천, 상사천, 하사천, 정척천, 상척천, 당촌천, 장천천, 대포천
	출촌면(18개소)	삼산천, 언내천, 취척천, 가정천, 외정천, 봉두천, 산촌천, 행정천, 내리천, 두봉천, 신흥천, 우산천, 평암천, 신산천, 가림천, 봉천천, 연화지천, 송곡천
	회양면(20개소)	나진2천, 청양천, 안포2천, 소포천, 황두천, 백소천, 나진1천, 울동천, 회현1천, 회현2천, 회양오원천, 회동천, 소정천, 태옥천, 봉오천, 이목천, 구미천, 정수천, 원포천, 안포1천
	남면(6개소)	우실천, 심포천, 시장천, 모하천, 두포천, 대유천
	동지역(23개소)	군양천, 봉경2천, 지내천, 시근치천, 직촌천, 직양천, 죽림천, 덕대천, 민흥천, 오원천, 소계천, 내동천, 대곡천, 계천천, 중방천, 호명천, 호송천, 진남천, 진북천, 원상암천, 신덕천, 소치천, 모흥천

주 : 해당 소하천의 경우 현재 설제가 진행중이므로, 최종 설제 및 설제 협의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

- 평가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계획의 성격, 특성 등을 토대로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영향권은 계획하천 구간 편입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간접영향권은 계획하천 주변지역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임지적 범위로 설정함.
- 공사시 하천내 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정비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소음 발생, 공사시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 계획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계획의 성격, 특성 등을 토대로 주요 검토항목과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요 평가내용

평가 대상지역	주요 평가내용
직접영향권 (계획하천 및 편입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 정비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사, 비탈면 발생</li> <li>-하천구간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li> <li>-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폐유발생</li> <li>-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농도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li> <li>-하천구간 공사에 따른 육수 생물상의 변화</li> </ul>
간접영향권 (계획하천 주변지역)	-공사시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 정온사상 및 생태계에 미치는 대기질, 소음·진동 및 동·식물상 등의 영향

<표 2.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하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계획하천			
임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하천 정비시 수생·수변식물의 식생 변화 -육상·육수동물상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 자 산	-하천 정비시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속 보전	지형·지질	-하천 정비시 하천지형 변화영향	-계획하천	
	수환경의 보전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관변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수 질	수 질	-하천 정비를 위한 계획 소하천의 부유토사 증가에 의한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수리수문	수리수문	-하천 정비시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표 2.3-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대상지역 범위	
임지의 타당성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계획 소하권 인근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항목의 분석 기초자료	·계획하권 및 주변지역
		대 기 질	·하권 정비시 주변 지역의 대기질 영향	·계획하권 및 주변 정온지역 (하권경계로 부터 300m)
		소음·진동	·하권 정비시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계획하권 및 주변 정온지역 (하권경계로 부터 300m)
		토 양	·하권 정비시 토양오염 영향	·계획하권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하권 정비시 건설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방안	·계획하권 및 주변지역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 소하권의 토지이용 변화	·계획하권	

###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6. 10.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14개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별 평가항목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li> <li>○ 대한 실정·분석의 적정성</li> </ul>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지질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
		수환경의 보전	○ 수질, 수리수문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대기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인구·주거	

<표 3.1-2>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세부 항목	선정결과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평가 ○ 식물상, 식물 및 동물상의 변화
		자연환경자산	평가 ○ 계획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평가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 토사유출, 비탈면 발생 등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 력
	경 관		평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지표·지질 )	평가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수 리·수 문
태 양 환 경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결미	

<표 3.1-2 계속>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분야	세부 항목	결정결과	사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평가 ○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평가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악취	평가 ○ 기존 오염원에 의한 악취 현황 파악
		토양	평가 ○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소음·진동	평가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위생공중보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과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제외 ○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미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친환경적자원순환		평가 ○ 공사시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평가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인구·주거	평가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산업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3.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에 따라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3.2-1>과 같으며, 항목별 현황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

<표 3.2-1> 평가 범위 및 방법의 선정 및 사유

평가항목		평가 범위 및 방법 선정		검토내용
		지역(범위)	방법	
자연 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 계획하권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탐문조사 ◦ 사업계획 분석	◦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육수동물상 현황 파악 및 변화 예측
	자연환경 자산	◦ 계획하권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및 미치는 영향 분석
	지형·지질	◦ 계획하권	◦ 현지 및 문헌조사 ◦ 공식계획평면도	◦ 지형·지질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사면 안정성 등 예측
	경관	◦ 계획하권	◦ 현지 및 문헌조사 ◦ 경관변화 예측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수질	◦ 계획하권	◦ 현지 및 문헌조사	◦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파악
	수리수문	◦ 하류수계	◦ 수리수문 해석	◦ 공식시 토시유출 영향예측 ◦ 계획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상	◦ 계획하권 ◦ 주변지역	◦ 인접 기상대 기상자료 분석 ◦ 현지조사	◦ 기초자료 활용(대기질 항목) ◦ 대기질 현황 파악
	대기질 (300m이내)			◦ 공식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예측
	악취	◦ 계획하권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기존 오염원에 의한 악취 현황농도 파악
	토양	◦ 계획하권 ◦ 주변지역	◦ 현지조사 ◦ 토양오염시 처리검토	◦ 토양현황 파악, 토양오염시 처리방법 검토
	소음·진동 (300m이내)	◦ 계획하권 ◦ 주변지역	◦ 현지조사 ◦ 소음·진동 예측식 - 거리감쇠 공식	◦ 소음·진동 현황, 발생원 및 공식시 정온시설 영향 범위 예측 ◦ 공식시 공사장비 기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하권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원단위 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공식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하권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토지이용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파악
	인구·주거	◦ 계획하권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파악

### 3.3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 계획

- 환경질 측정은 지표수질(상·하류 2회), 하천저질(하류 2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식물상 조사 계획은 각 계절을 대표하는 시기에 2개월 조사로 계획함.

<표 3.3-1>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지점수	조사횟수	비고
환경질 측정	지표수질 ○ pH, BOD, COD, DO, SS, T-N, T-P, 카드뮴, 수은, 비소, 납, 6가크롬, 유방, 수은, 관로로빈a 등 총 15개 항목	107개 (상·하류)	2회	
	하천저질 ○ 강연립량, COD, T-N, T-P, pH, TOC,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총 10개 항목	107개 (하류)	2회	
동·식물상 조사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곤충)	계획이전 및 주변지역	2회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 군집 ○ 육수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계획이전 및 주변지역	2회	

#### 4.1 의견수렴 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함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함.

<p><b>「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b></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b>「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b></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세지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정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li> <li>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li> <li>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li> </ol>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li> <li>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li> </ol>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정·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 4.2 의견수렴 계획

##### 4.2.1 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과업인 여수시 소하권정비종합계획(제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함** 계획함.

4.2.2 평가서 초안 공람

- 역수서 통과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작간점적으로 예상되는 해당권역의 행정구역(읍·면)에 전역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40일 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표 4.2-1> 전역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고·공람 계획(안)

구 분	공람장소(안)	비 고
전역환경영향평가서(초안)	동산읍, 소리면, 읍촌면, 회양면, 남면, 민덕동, 영봉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미평동, 묘도동	1읍·4면·7동

4.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역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공청회 개최는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할 것임.

<p><b>「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b></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역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역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b></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p> <p>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역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p>

#### 4.2.4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의거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및 여수시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p><b>「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b></p>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부장관</li> <li>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li> </ol>
<p><b>「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b></p> <p>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li> <li>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정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li> </ol>

#### 4.2.5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게시할 것임.

##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 5.1.1. 심의방법 및 심의사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사항
  - 해당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 검토
  - 대안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설정
  -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5.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내용

- 주관행정기관 : 여주시
- 협의회 개최 : 서면심의 실시
- 협의회 구성위원

연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1	위원장	여주시 건설방재과장	김 세 권	법 시행령 제4조 ①
2	위원	여주시 기후환경과장	송 성 현	법 시행령 제4조 ②의 2
3	위원	여주시 하수도과장	김 기 재	법 시행령 제4조 ②의 4
4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조 경 숙	법 시행령 제4조 ②의 1
5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노 태 호	법 시행령 제4조 ②의 3의2
6	위원	(주)우빈기술공사 소하원관리위원회	김 정 생	법 시행령 제4조 ②의 3
7	위원	태경엔지니어링(주) 제세사전영향평가 위원	김 진 기	법 시행령 제4조 ②의 3
8	위원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조 환 익	법 시행령 제4조 ②의 5의2
9	위원	소리면 사곡1구 마을이장	김 인 선	법 시행령 제4조 ②의 5의3

## 5.2 심의결과

### 5.2.1. 항목별 결평내용에 대한 의견

가. 여수시 건설방재과 장세권 위원장

- 의견없음

나. 여수시 기후환경과 송성현 위원

<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계 획 명	여수시 소하원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계 획 위 치 (규모)	위 치 : 여수시 관내 약 107개 소하원 규모 : 연장 약 149,115km(소하원 재수립 연장)
<b>심 의 의 견 서</b>	
1. 총괄의견 ○ 평가사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조사방법에 대한 일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22호)」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아울러 특달남, 여좌면, 가마면의 412ha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우기 시 토사유출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II. 항목별 결평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2. 노역비 8.7상한 ○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3. 대한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환경영향 측정 중 하원거점의 경우 상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며 지표수질과 동일하게 2회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소하원 상·하류지역 1회 조사보다는 하류지역 2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평가문에서 65p).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소하원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작성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17. 5.

심의위원 : 송 성 현 (인 또는 서명)

- 18 -

다. 여수시 하수도과 김기재 위원

<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계 획 명	여수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지 회 위 치 (규 모)	위 치 : 여수시 관내 약 107개 소하천 규 모 : 연장 약 149.115km(소하천 재수립 연장)
<b>심 의 의 견 서</b>	
<p>I.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수질오염 예방대책 강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li> <li>○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변수역을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반영되어야 함.</li> </ul> <p>II.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항목별 영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li> <li>○ 자연생태 및 수질환경보호에 중점을 두어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함.</li> </ul>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동물서식처 훼손 등 생태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li> <li>○ 자연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가능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함.</li> <li>○ 상위정책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여야 함.</li> </ul>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방지, 환경개선 및 보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며 효율적인 하천기본계획수립</li> </ul> <p>4.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li> <li>○ 평가항목의 조사 및 평가는 최신자료를 이용해야 함.</li> </ul>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야 함.</li> </ul>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치수정책을 활용하여 정비되어야 함.</li> </ul>	

2017. 5.

심의위원 : 김 기 재 (인 또는 서명)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통보서**

### **[여수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여수시 소하천 107개소(L= 149.115km)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계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보아)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기 수립된 하천에서 변경, 지정폐지 및 신규지정 할 계획에 대한 근거사유를 명확히 제시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서민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심의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소하천 정비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

##### **2. 토지이용 구상안**

-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소하천을 정비하고, 하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 보존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중요 범정보호종 서식지 등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 포함되거나 인접한 하천은 최대한 정비 지양

### 3. 대안

- 대안은 2개 이상을 제시·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 선정된 대안에 대한 선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하상폐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
-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파입대상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현황 조사는 각 분류군별로 적합한 시기에 조사되어야 하며, 동·식물상 각 분류군 별로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조사지점·조사구역·조사경로 등을 기형도에 표기
  - 해안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현황 및 해당 소하천 기수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기수갈고동, 대추키고동 등) 서식 등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적정 저감대책을 검토·제시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중요 법정보호종 서식지 등이 인접 및 포함된 구간, 연안육역 해당 하천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 및 보전방안을 검토·제시

- 동식물상 조사결과는 소하천별로 동식물상 서식현황 및 범정부호종 서식현황(술민지점 포함 등)을 정리하여 제시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걱정한 조망점(도로 등)에서의 경관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하여 적정한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걱정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홍보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 및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6. 기타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자료(10년 이내)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자연적 특성과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규장·지침\* 등을 참고하여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지속가능한 하천사업(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15.3.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기술 지침서(2011, 환경부)」 참고

2017. 6. .

심의위원 조 경 숙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여수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전라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노태호 (인)

**□ 중 결 의 건**

○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소하천의 하천설계 변도율 특정기준(50년 풍)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하천별 규모 및 준위에 따른 차별화된 치수 및 하천관리 방안의 수립을 위한 대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수질대리지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분포하천, 생태자연도 1등급지, 주요 능선축, 자연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 내 및 연계 소하천의 보 및 낙차공 철거 방안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 또한 대상 하천의 저질오염도를 평가하여 필요시 요구되는 조치계획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하천별 목표수질 설정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재기를 발생량을 심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출 및 처리 내용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 환경보전적 범정계획 수립

- 파도랑 축제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지양하고 이를 감소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 10년 단위 장기 범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호안 직용 및 하구정비 기법 대안

- 호안공법으로 석재교(자연식 쌓기, 석생용벽, 석축쌓기 등) 등의 적용을 지양하여야 함. 하천역의 경우 최상부역을 제외하고 자연식으로 호안을 이루는 곳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고 하천구역의 준위에 따라 자연적 경관성이 적합한 호안공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형적 수지단체를 유발을 지양하여야 함
- 중저인 수지단체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연친화적 기법 적용, 상위 규모

- 의 하천역과 합류되거나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구역은 황적 시설물에 의한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 대안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사연도 1등급지 및 해안기수역에 포함 또는 인접한 하천역의 경우 산림역과 연계된 호안은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형보전 구간을 설정, 반영하여야 함

###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현황조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소하천별 동·식물 서식 및 분포현황 파악은 10년간 적용될 장기비점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 가정 근거가 되는 사항이므로 소하천개황 및 식생, 담수생물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의 경우 권역별(면) 소산식물 및 출현 동물상 목록 제시를 지양하고 소하천별 목록을 작성
- 소하천별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 지점 명기
- 해안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의 경우, 기수역이 범람야 소하천 식류 분포를 확인하여 함. 또한 하천 습지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 하천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 사업대상 하천 중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에 다수의 대상 하천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는바, 이들 소하천은 수변식생 원형보전, 보/낙차공 철거 등의 사업계획과 함께 실행 가능한 보전대책을 별도로 수립·제시하여야 함(해당구간과 연계된 소하천 현황 및 개수계획을 생태사연도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
- 특히 해안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의 경우 기수역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도면으로 공간적 범위를 명시하여야 함

#### ○ 보 및 낙차공 등 시설물계획

- 낙차공 또는 보는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준치 및 제거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및 준치목적의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이를 지양하여야 함
-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여 노후 되었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낙차공은 철거하여 유수의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적 구조물의 수를 감소시키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하천 연속체 기능을 저해하는 횡적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위 내용 참고) 내 및 연계 소하천의 보 및 낙차공 철거 방안 및 평가결과 제시
- 각 소하천별 보 및 낙차공의 현황과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준차 여부를 명시
- 소하천별 단위거리(1km)당 보 및 낙차공 개소수(유하거리 1km 미만의 경우 환산값)

- 소하천별 보 및 낙차공 어도 유무 및 설치 비용
  - 준치 및 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절거 및 축소 조정안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가능 대상 시설물
- 하천계획빈도
- 사업대상 소하천과 인접한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 하천 설계 빈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교란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평가
- ※ 현재 국가하천(100~200년 빈도), 지방하천(50~100년 빈도), 소하천(30~100년 빈도) 등 하천등급별 설계빈도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상 소하천의 규모(유역면적: 0.20㎢~8.93㎢, 하천연장: 0.50km~3.98km) 및 홍수량(7.0m<sup>3</sup>/s~245.0m<sup>3</sup>/s)을 고려
- 하천시설물 정비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정량적인 처리계획 수립
- 폐기물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성상, 종류, 양을 사전에 예측하여 발생단계에서 분리·배출 및 수집·보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증설/재설치, 철거 계획이 확정된 교량, 낙차공 및 보 등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성상, 종류별로 산정하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참고하여 위탁처리에 따른 조각, 데립, 재활용량을 정량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 수질개선 대책
- 개별 소하천별로 수질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54호)”을 참조하여 소하천별 목표수질 선정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및 대책(토류 정제구역의 폐소, 단층공간 확보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정비우선순위 선정
- 계획하천 중 풍수해위험지구, 수질오염관리 필요 지역, 인구밀집지역 등과 인접한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환경적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선정하는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인구주거 항목 추가
- “4 주민의견 수렴” 참조
- 4. 주민의견 수렴**
- 지역 지식을 활용한 계획 수립
- 본 계획은 치수기능 향상의 일환으로 홍수소방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계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거 홍수도 인한 수해 관련 고유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서면조사 혹은 면담을 통해 수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지식을 조사하고 이것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

이 바뀔지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 해당 없음

6. 기타

○ 평가 및 분석자료의 가독성 확보

- 각종 필요한 도면(조사지점 및 경로, 식생도, 침수역 수계분포 현황,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도, 중요종 출현분포도 등)은 획득 가능한 가장 상세한 지형도 및 포지이용계획도에 투영도를 이용하여 명확히 중첩·표기하되, 각 지점에 대해서는 좌표를 명시하여야 함(가독성을 확보할 것)

다. (주)우빈기술공사 김성생 위원

<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계 회 명	이수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계획 위치(규모)	위 치 : 이수시 관내 약 107개 초하천 규 모 : 연장 약 149.115km(소하천 재수립 연장)
심 의 의 견 서	
<p>I.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 정비계획시 이·치수 뿐만 아니라 수질과 환경생태적 기능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li> </ul> <p>II.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하게 설정되었음.</li> </ul> <p>2. 토지이용 구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하게 설정되었음.</li> </ul>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나친 하폭 확장과 하천 구조물 설치 등의 계획은 수변의 환경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하천교란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야 함.</li> </ul>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류지점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해양항목도 검토되어야함</li> <li>○ 환경질 측정이나 동식물상 조사는 하천의 특성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조사하고, 법정 보호 중 유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li> </ul>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들이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li> </ul>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라 하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2017. 05. 23

심의위원 : 김 성 생 (인  서명)

<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전력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계 획 명	여수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제 수립
계 획 위 치 ( 규 모 )	위치 : 여수시 관대 방 10/개 소하천 규모 : 연장 약 149.115km(소하천 제 수립 연장)
<b>심의의견서</b>	
<p><b>I. 총괄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수시는 국가삼당 입지 도시라는 철과 광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임을 고려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제수립하여야 합니다.</li> <li>○상태자연도 1,2등급 지역(10, 61 등) 및 인접지의 환경영향이 우려되므로 예측 및 분석에 사용된 기법과 내용 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타당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li> <li>○야생생물보호구역(31, 39, 45 등) 및 인접지의 환경영향이 우려되므로 예측 및 분석에 사용된 기법과 내용 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타당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li> <li>○수질조사와 도양 오염도 조사 등을 함으로 오염도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우려가 있는 소하천은 원인을 파악하거나 해결하는 대안 등을 통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십시오.</li> <li>○수질개선과 환경 기능 등을 검토하여 급급적 본래의 생태 환경과 하천 경관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li> <li>○주변 토지이용 현황(비닐하우스 등)을 근거한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li> <li>○나열식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보다 지역 및 권역별(산단, 연안, 가로변 취락지 등) 특징을 고려한 다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li> </ul> <p><b>II.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주변지역" 이라는 공간의 범위에서 여수라는 도시 특성(산단, 관광 등)을 감안하여 생태보호, 경관을 위한 자연지형 유지, 하천의 자연유하 형식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지역의 특성에 의해 신중성있게 적용하여 주십시오.</li> </ul> <p><b>2. 토지이용 -상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태자연도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li> <li>○하천 개수계획의 수립여부에서는 하천의 현형근거에서 미후 변화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각 구간을 기준한 단면도(형) 작성 등 실제적인 내용을 적도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신설 예정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공법과 재료를 적용하여 주시고 재해 및 안전을 전제한 자연하천 구간에 대해 최대한 보전하여 주십시오.</li> <li>○하천의 유속을 고려하여 주시고 생태적 단절이 없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십시오.</li> </ul>	

오.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하천은 재해 안전을 전제한 범위에서 정비를 최소화하거나 정비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3. 대안**

- 대안의 미 선정 "시기▪순서"에서 빠른 순서가 최고의 조건일지라도 여수시의 실제 사업을 동일시기에 전체 추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으로 본 용역에서 재해예방과 유지관리방안을 고려한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지수계획 대안 검토에서 준설 및 제방의 축제(보축) 등의 사업에서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사업 추진의 근거와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 비교 등을 통해 최적의 사업범위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4.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에서 "해양환경" 부분에 대해 "제외"하였으나 여수시의 특성(해양관광도시)을 감안하여 연안해역에 접한 하천의 경우 "해양환경"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에서 "악취" 부분에 대해 "제외"하였으나 여수시의 특성(국가산업단지 등)을 감안하여 여수국가산업단과 농공단지, 주거지 등에 근접한 하천의 경우 "악취" 부분에 대해 "평가" 여부를 재확인하여 하여 주기 바랍니다.
- 환경질 측정(지표수질, 하천저질)에서 현재 여수시 107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종합계획에서 측정 지점수를 107개로 결정할은 1 하천에서 1 지점에 대한 수질과 저질을 측정한다는 의미로 실제 "상·하류"를 측정한다는 전제에서 모순점입니다. 최소 "상·하류" 기준 204개 지점수를 고려하여 주기 바랍니다.
- 각 하천 및 사업지 범위를 근거로 오염원, 부하량 등을 선정·평가하여 제시하고 해당 하천의 유역 내 장래 개발계획 등을 조사, 검토하여 장래 발생 및 배출 부하량을 선정하고 변화 및 예측되는 수질을 기술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기 바랍니다.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임으로 "과업지시서"를 근거하여 재확인 및 검토하여 주십시오.

**b.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실제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홍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십시오.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환경 피해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와 주민, 실무 부서와 타 부서 관계자(도시계획, 환경, 산림, 관광 등)와 주요 사안별로 검토 과정을 요청합니다.

2017. 5.

심의위원 : 김진기



- 2 -

- 29 -

아.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위원

<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계 획 명	여수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제수립
계 획 위 치 (규 모)	위 치 : 여수시 관내 약 107개 소하천 규 모 : 연상 약 149.115km(소하천 제수립 연장)
<b>심 의 의 건 서</b>	
<p>I.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함.</li> <li>○ 소하천 환경계획은 자연보전, 친수기능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해야함.</li> <li>○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함.</li> </ul> <p>II. 항목별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의 유수이용과 친수지구 등 공간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함.</li> <li>○ 공간이용 현황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수요자 현황 등도 포함하여야함.</li> <li>○ 대상지역은 사업으로 인한 항목별영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해야함.</li> <li>○ 자연생태 및 수질환경, 생활환경 등에 중점을 두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함.</li> </ul>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의 사명화를 유도하며 가급적 직강화(直江化)는 피하도록 계획하여야함.</li> <li>○ 보전이 필요한 구간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권수계획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여야함.</li> <li>○ 자연생태환경이 양호한 소하천구간은 가능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함.</li> <li>○ 소하천 사업으로 동물서식처 훼손 등 생태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li> </ul>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 하폭의 과도한 확장이나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는 최소화로 검토해야함.</li> <li>○ 장래수질예측 결과를 수질개선과 생태보전 및 복원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해야함.</li> <li>○ 유량 및 수질, 오염원,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해야함.</li> <li>○ 하천특성과 생태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생태보전 및 복원시설 등을 반영해야함.</li> <li>○ 생태환경은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해야함.</li> </ul> <p>4.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 수질조사는 유량조사도 병행하여 수질과 유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함.</li> <li>○ 분류군별로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해야함.</li> <li>○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선정, 서식지조성 등에 활용해야함.</li> <li>○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등 경오염원과 비경오염원을 조사해야함.</li> <li>○ 소하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 확대를 고려해야함.</li> </ul>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많은 참여가 있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 적극 반영해야함.</li> </ul>	

2017. 5. 30.

심의위원 : 조 환 익



<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신라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계 획 명	여수시 소하권경비 종합계획 제수업
계획위치(규모)	위 치 : 여수시 반대 약 107개 소하권 규모 : 면적 약 149.115km(소하권 제수업 면적)
<b>심 의 의 견 서</b>	
I. 총괄의견 ○ 사업시행시 조4항으로 인한 외형시각오염 예방의책 강화를 원천차 단지는 선별조사와 하여줄 ○ 소하권의 혼란적인 여부와 관련 있는 상하계류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수여를 지연하지않고 II. 항목별 환경내용에 대한 의견 원수관수로 분할 되어야함	
1. 전야한경영감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범람범위 중은 중충지역으로 222ha에 설정하길 - 사업영역 및 주민농림이 중충되는 지역 사업지역을 신장해야함	
2. 도지이용 수감안 ○ 사업시행으로 도로시역지 지공을 선에게 권공(이) 변경 리에 있도록 하여줄 ○ 지인 설계 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가능한 보편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함 ○ 상하계류별로 222ha에 중충지역인 도지이용 계획을 구상하여야함	
3. 대안 ○ 180분유하고 각 선공을 최종 선공안과 그 사유를 명시해야함	
4.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항목별 중요도기준은 중충부 범람지역 명한 예측 및 저감노출을 반영하는 평가치에너야함 ○ 평가항목 조사 및 평가는 집단수준은 이용하여야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준락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함 ○ 하천 주변 토지주와 주민은 통려 다할이 있도록한다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해당은 개발 환경은 원천관리 있도록 하여 입지타당 작성계획은 원천차 단지를 신장되어야함	

2017. 4. 20

심의위원 : 김인선 (위 또는 서명)

# 통장 모집 공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모집 대상

○ 대 상 : 시전동 47통 통장

※ 47통 관할구역 : 웅천 부영 1차아파트 101동 ~ 104동

## 2.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관할구역 통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입주자 회의 등에서 선출된 사람이거나 해당 통에 거주하는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역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 3. 통장의 임무

- 통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통을 대표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작업 등 지원

4. 임 기 : 전임자 잔여임기(임명후 ~ 2017. 12. 27.)

5. 모집(신청) 기간 : 2017. 7. 19. ~ 7. 25.(7일간)

6. 제출 서류 : 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추천서 각 1부

7. 제출처 및 기타 문의 : 시전동주민센터(문경환 주무관 ☎659-1603)

2017. 7. 19.

# 시 전 동 장

##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시전동 (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 년)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여수시 시전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